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9.(수) 08:00	 <p>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p>
배포일시	2019. 1. 9.(수) 08:00	
담당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담당자	과장: 홍연권(053-609-6521) 사무관: 황윤태(053-609-6524) 담당: 황선경(053-609-6540)	

2018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동북지방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에서 강원도 약 2,200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만 15세이상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ro>) 및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KOSIS(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위치

메인화면 > 국내통계>주제별 통계>고용·임금 >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통계는 “행정구역(시도)”으로 구분되어 있음

★ 보도자료 다운받기

* 전국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새소식 > 보도자료 > 고용·노동

* 대구, 경북, 강원자료

: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 새소식 > 보도자료 > 고용

목 차

- 2018년 12월 강원도 고용동향(요약) 1

- 2018년 12월 강원도 고용동향
 -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4
 - 2. 취업자 동향 5
 - 3. 실업자 동향 7
 - 4. 비경제활동인구 7

- 2018년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8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10

- 자주하는 질문 11

- 한국표준 산업·직업 분류 13

- 고용동향 공표 일정 15

2018년 12월 강원도 고용동향(요약)

□ 2018년 12월 강원도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에 비해 0.1%p 하락하였음.

* 15~64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고용률: 65.2% (전년동월에 비해 1.1%p 상승함)

□ 취업자는 74만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천명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1천명), 건설업(7천명), 농림어업(6천명)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1만4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명) 제조업 (-1천 명)부문은 감소하였음.

<취업자 및 고용률>

		'17년12월	'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 원	취업자	743	815	820	823	820	819	745
	전년동월대비 증감	15	-17	-8	7	1	9	2
	고용률	57.3	62.7	63.1	63.3	63.0	62.9	5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4.1)	(67.8)	(68.2)	(68.4)	(68.4)	(68.3)	(65.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15세~64세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에 비해 0.3%p 하락하였음.

- 실업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천명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에 비해 남자는 1만1천명으로 2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8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실업자 및 실업률>

	'17년 12월	'18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원	실업자	20	23	24	20	20	14	18
	전년동월대비 증감	4	10	6	2	-5	-6	-2
	실업률	2.7	2.8	2.9	2.4	2.4	1.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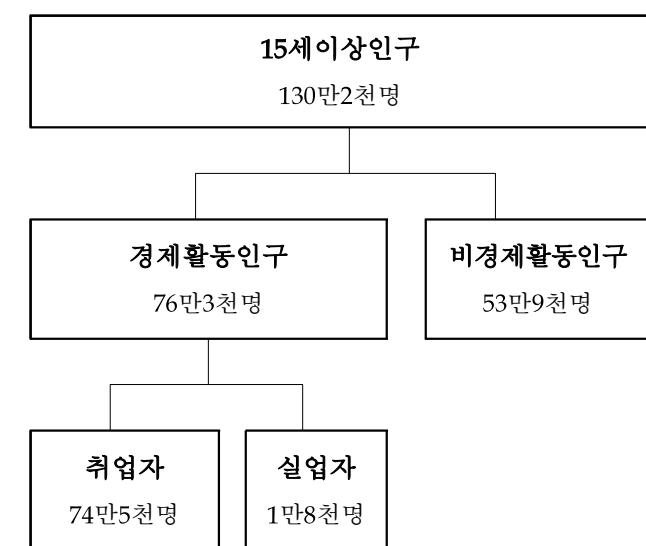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에 비해 남자, 여자 각각 3천명이 증가하였음.

<2018년 12월 경제활동인구 구성 >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취업자	743	819	745	2	0.3
실업자	20	14	18	-2	-9.8

2018년 12월 강원도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18년 12월 강원도 15세이상 인구는 13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0.4%)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3천명(0.5%)이, 여자는 2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76만3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동일하였고, 여자는 1천명(-0.1%)이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1.0%)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3천명(1.3%)이, 여자는 3천명(0.8%)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58.6%로 전년동월에 비해 0.2%p 하락하였음.

<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12월	연간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1,297	1,300	1,302	1,302	5	0.4
남 자	635	636	637	638	3	0.5
여 자	663	664	665	665	2	0.3
- 경제활동인구	763	812	832	763	0	0.0
남 자	424	449	459	424	0	0.1
여 자	339	363	373	339	-1	-0.1
- 비경제활동인구	534	488	470	539	5	1.0
남 자	211	187	178	213	3	1.3
여 자	323	301	291	326	3	0.8
■ 경제활동참가율	58.8	62.5	63.9	58.6	-0.2	-
남 자	66.8	70.6	72.0	66.6	-0.2	-
여 자	51.2	54.7	56.2	51.0	-0.2	-

2. 취업자 동향

- 2018년 12월 취업자는 74만5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천명(0.3%)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천명(0.5%)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동일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1천명), 건설업(7천명), 농림어업(6천명)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1만4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명) 제조업 (-1천명)부문은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8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6천명)는 증가하였으나, 사무종사자 (-7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4천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천명)는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52만1천명으로 5천명(1.0%)이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22만4천명으로 3천명(-1.5%)이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4천명으로 2만1천명(6.2%)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1만4천명으로 2만2천명(-16%)이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4만4천명으로 6천명(15.1%)이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8만5천명으로 동일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9천명으로 3천명(-6.5%)이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5만2천명으로 4천명(-2.8%)이 감소하였으나, 36시간이상 취업자는 58만4천명으로 6천명(1.0%)이 증가하였음.
 -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0.5시간 감소하였음.
-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에 비해 0.1%p 하락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64.9%로 0.1%p 상승하였으나, 여자는 49.8%로 0.2%p 하락하였음.

< 취업자 및 고용률 >

강원도

(단위: 천명, 시간, %, %p)

	2017년	2018년				
		12월	연간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취업자	743	789	819	745	2	0.3
남 자	412	436	450	414	2	0.5
여 자	331	353	369	331	0	-0.1
농림어업	48	87	99	54	6	12.9
광공업	65	59	60	60	-5	-7.1
제조업	55	52	53	54	-1	-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630	643	661	630	0	0.1
건설업	53	62	67	60	7	12.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91	181	175	178	-14	-7.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4	330	350	325	11	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2	70	69	68	-4	-5.6
관공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1	114	118	119	8	7.5
사무종사자	116	113	112	109	-7	-6.0
서비스·판매종사자	207	206	205	204	-4	-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4	79	93	49	6	12.5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264	277	290	263	-1	-0.5
임금근로자	516	533	549	521	5	1.0
상용근로자	343	353	360	364	21	6.2
임시근로자	135	138	144	114	-22	-16.0
일용근로자	38	42	45	44	6	15.1
비임금근로자	227	256	270	224	-3	-1.5
자영업자	185	202	210	185	0	-0.2
무급가족종사자	42	54	60	39	-3	-6.5
36시간 미만	156	178	178	152	-4	-2.8
1~17 시간	64	63	67	59	-5	-7.8
18~35 시간	92	115	111	93	1	0.8
36시간 이상	578	600	633	584	6	1.0
36~52 시간	420	440	483	450	30	7.2
53시간 이상	158	160	151	134	-25	-15.5
일시휴직	9	11	8	9	1	5.8
주당평균취업시간	41.6	41.3	41.0	41.1	-0.5	-1.2
■ 고용률	57.3	60.7	62.9	57.2	-0.1	-
남 자	64.8	68.5	70.7	64.9	0.1	-
여 자	50.0	53.1	55.4	49.8	-0.2	-

※ 주: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상대표준오차가 클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자 동향

강원도

- 2018년 12월 실업자는 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천명(-9.8%)이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천명으로 2천명(-14.4%)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천명으로 동일하였음.
-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에 비해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5%로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2.3%로 동일하였음.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4/4분기	12월	연간	4/4분기	11월	12월	전년동월(분기)비
							증감 증감률
■ 실업자	22	20	24	17	14	18	-2 -9.8
남 자	13	13	13	11	9	11	-2 -14.4
여 자	9	8	10	6	5	8	0 -2.5
■ 실업률	2.7	2.7	2.9	2.1	1.6	2.4	-0.3 -
남 자	2.9	2.9	3.0	2.5	1.9	2.5	-0.4 -
여 자	2.4	2.3	2.9	1.8	1.3	2.3	0.0 -
15 ~ 29세	9.5	-	8.0	5.0	-	-	(-4.5) -
30 ~ 59세	1.7	-	1.6	1.7	-	-	(0.0) -
60세 이상	1.2	-	2.1	1.9	-	-	(0.7) -

※ 주 : 연령별 실업률은 분기별로 공표함.

4. 비경제활동인구

- 2018년 1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1.0%)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만3천명으로 3천명(1.3%)이, 여자는 32만6천명으로 3천명(0.8%)이 각각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2017년		2018년				
	12월	연간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 비경제활동인구	534	488	470	539	5	1.0	
남 자	211	187	178	213	3	1.3	
여 자	323	301	291	326	3	0.8	

2018년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 2018년 연간 15세이상인구는 13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5천명(0.4%)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81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명(0.2%)이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에 비해 0.1%p 하락하였음.
- 취업자는 78만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명(-0.1%)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0.7%로 전년에 비해 0.3%p 하락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8천명), 건설업(4천명), 농림 어업(2천명)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천명), 제조업(-1천명) 부문은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사무종사자(7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명)는 증가하였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3천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3천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천명)는 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천명(11.3%)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9%로 전년에 비해 0.3%p 상승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천명(0.8%) 증가하였다.

< 연간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1,295	1,300	5	0.4
■ 경제활동인구	811	812	1	0.2
▶ 참가율	62.6	62.5	-0.1	
■ 취업자	790	789	-1	-0.1
▶ 고용률	61.0	60.7	-0.3	
남 자	69.0	68.5	-0.5	
여 자	53.3	53.1	-0.2	
■ 실업자	21	24	2	11.3
▶ 실업률	2.6	2.9	0.3	
남 자	2.3	3.0	0.7	
여 자	2.9	2.9	0.0	
■ 비경제활동인구	484	488	4	0.8

< 연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시간, %, %p)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 취업자	790	789	-1	-0.1
남 자	437	436	-2	-0.4
여 자	352	353	1	0.1
농림어업	85	87	2	2.5
광공업	63	59	-4	-5.9
제조업	52	52	-1	-1.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642	643	1	0.1
건설업	58	62	4	6.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91	181	-10	-5.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1	330	8	2.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1	70	-2	-2.2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6	114	-2	-1.8
사무종사자	106	113	7	6.2
서비스·판매종사자	209	206	-3	-1.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8	79	1	1.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281	277	-3	-1.1
임금근로자	526	533	7	1.4
상용근로자	348	353	5	1.4
임시근로자	139	138	-1	-0.5
일용근로자	39	42	3	7.2
비임금근로자	264	256	-8	-3.1
자영업자	207	202	-5	-2.3
무급가족종사자	57	54	-3	-6.0
36시간 미만	156	178	22	13.9
1~17 시간	62	63	2	2.6
18~35 시간	95	115	20	21.2
36시간 이상	620	600	-20	-3.2
36~52 시간	433	440	7	1.6
53시간 이상	187	160	-27	-14.3
일시휴직	14	11	-3	-22.9
주당평균취업시간	42.4	41.3	-1.1	-2.6
■ 고용률	61.0	60.7	-0.3	
남 자	69.0	68.5	-0.5	
여 자	53.3	53.1	-0.2	

주: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상대표준오차가 클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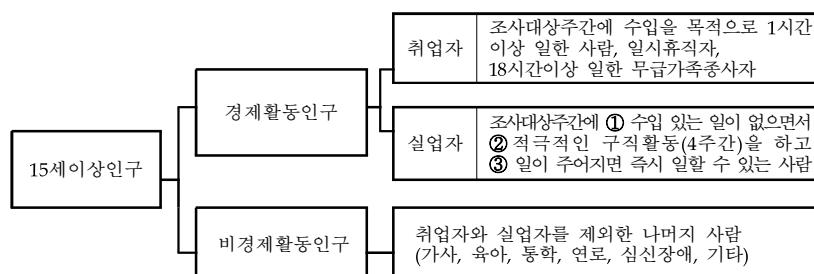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4,800가구(강원 2,200가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기 때문(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15세를 고용통계 대상인구로 정함)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용어해설



- 경제활동참가율(%) = $(\text{경제활동인구} \div 15세이상인구) \times 100$
- 고용률(%) = $(\text{취업자} \div 15세이상인구) \times 100$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 나이하한 만 15세, 나이상한 없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 나이하한 만 15세, 나이상한 만 64세
- 실업률(%) = $(\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실업자인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ILO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归属되도록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둘째아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조사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계절적 요인,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실업자수도 출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에 비해 취업자수나 실업자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지표의 변화는 전년동월의 지표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전월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표가 아닌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계절조정지표에도 공통적인 계절성만이 제거된 것일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2.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이는 2011.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12.1월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록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사업·개인·공공서비스 E, L~U)

A 농업, 임업 및 어업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 36 수도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B 광업	F 건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제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증개업 ▪ 47 소매업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H 운수 및 창고업	P 교육서비스업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E 부동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68 부동산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F 건설업	J 정보통신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K 금융 및 보험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6 도매 및 상품증개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H 운수 및 창고업	L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I 숙박 및 음식점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 99 국제 및 외국기관
J 정보통신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K 금융 및 보험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L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P 교육서비스업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 85 교육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85 교육서비스업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U 국제 및 외국기관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 99 국제 및 외국기관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 관리자
▪ 11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 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 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개인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 기준임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재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융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칙조기조작원, 시출기조작원, 판금기 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치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경침원 등

부록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도자료명	공표일자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9. 1. 9.(수)
2019년 1월 고용동향	2019. 2. 13.(수)*
2019년 2월 고용동향	2019. 3. 13.(수)
2019년 3월 고용동향	2019. 4. 10.(수)
2019년 4월 고용동향	2019. 5. 15.(수)*
2019년 5월 고용동향	2019. 6. 12.(수)
2019년 6월 고용동향	2019. 7. 10.(수)
2019년 7월 고용동향	2019. 8. 14.(수)
2019년 8월 고용동향	2019. 9. 11.(수)
2019년 9월 고용동향	2019. 10. 16.(수)*
2019년 10월 고용동향	2019. 11. 13.(수)
2019년 11월 고용동향	2019. 12. 11.(수)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통계청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게재 하겠습니다.

* 2019년 2월 고용동향은 설날(2.4~2.6), 5월 고용동향은 어린이날 및 대체휴일(5.5~5.6), 10월 고용동향은 한글날(10.9.)을 고려하여 공표일자를 정하였습니다.